「환경영향평가법」 주요 Q & A

2019. 5

환 경 부

국토환경정책과

목 차

Q1. 같은 종류의 사업 ····· 1

Q2. 동일 부지에 추진하는 다른 종류의 사업의 평가 대상 ····· 2

Q3. 평가 제도 이전에 승인을 받은 사업의 계획 변경시 평가 대상 ····· 3

Q4. 누적된 토지이용계획 변경률 ····· 4

Q5. 토지이용계획 변경률 ····· 5

Q6. 사전공사 금지의 예외 ····· 5

Q7. 제척된 부지의 시설·시설 규모의 증가율 ····· 6

Q8. 토석채취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····· 6

Q9. 수목이식계획 변경에 따른 협의대상 ····· 7

Q10. 산업단지의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····· 8

Q 1. 같은 종류의 사업

○ 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[별표 3] 비고 제4호가목에 따라 같은 사업자가 동일 영향권역에서 '같은 종류의 사업'을 하는 경우로서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, '같은 종류의 사업'이란?

☞ 같은 종류의 사업이란 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[별표 3] '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' 규정된 각각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를 말함

〈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별표 3 〉

구 분	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
15. 폐기물처리시설·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	가.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1)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폐기물매립시설의 조성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3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2)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의 조성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25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3)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로서 처리능력이 1일 100톤 이상인 것

▪ (사례①) 가목1) 일반폐기물 + 가목1) 일반폐기물 ☞ 같은 종류의 사업임

▪ (사례②) 가목1) 일반폐기물 + 가목2) 지정폐기물 ☞ 다른 종류의 사업임

∴ 시행령 [별표 3] 제15호가목의 1)일반폐기물매립시설, 2) 지정폐기물매립시설, 3) 소각시설은 다른 종류의 사업임

※ (법제처 법령해석례, '13.12.31) 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제12호가목1)부터 3)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"1) 묘지 또는 봉안시설의 설치사업", "2) 초지의 조성사업", "3) 그 외의 사업"은 개별사업의 근거법률, 설치목적, 설치절차 등이 상이할 뿐 아니라,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기준면적이나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요청시기도 해당 3가지 유형의 개별사업이 각각 달리 규정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, 이들 각각의 사업을 "같은 종류의 사업"으로 볼 수 없으며, "같은 종류의 사업"은 같은 표 본문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로서 규정된 각각의 사업을 의미함

Q 2. 동일 부지에 추진하는 다른 종류의 사업의 평가 대상

○ 주택건설사업 추진시 동일 부지에 주택사업계획 승인(150,000㎡)과 산지전용허가(150,000㎡)가 수반될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?

☞ 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[별표 3] 비고 제9호에 따라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로서 계산식(해당 사업면적 또는 용량 등/별표 3 대상사업의 최소면적 또는 용량 등+...)에 따라 산출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함

- 따라서, 동일 부지에 다른 종류의 사업인 「산지관리법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「주택법」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는 추진하는 경우에는 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[별표 3] 비고 제9호 규정에 따른 계산식을 적용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산정하여야 함

- 본 사업의 경우 [별표 3] 비고 제9호에 따른 계산식의 수치의 합이 1 이상이므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임

◈ **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 비고 제9호 환경영향평가 대상**

-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연계추진시 산출된 수치가 1이상이면 평가대상

$$\frac{\text{해당 사업면적 또는 용량 등}}{\text{별표3 대상사업의 최소면적 또는 용량 등}} + \cdots = \frac{150{,}000}{300{,}000} + \frac{150{,}000}{200{,}000} = 1.25$$

※ (법제처 법령해석례, 18-0811, '19.2.20) 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[별표 3] 비고 제9호 중 "둘 이상의 사업"에 "면적을 기준으로 한 개발행위로서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인 사업과 동일한 부지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종류의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의 사업"이 포함됨

Q 3. 평가 제도 이전에 승인을 받은 사업의 계획 변경시 평가 대상

○ 환경영향평가 제도 시행 전에 승인을 받은 공장(30만㎡)의 전기 공급을 위해 발전시설(100MW)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, 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별표 3 비고 ①제4호, ②제9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?

※ (평가 대상) 공장설립승인면적 150,000㎡ 이상, 발전시설 용량 30MW 이상

☞ ① 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[별표 3] 비고 제4호다목2)에 따라 [별표 3] 개정 당시 평가 대상규모 이상인 사업(공장)으로서, 해당 사업의 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 [별표 3] 개정으로 새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된 경우에는 동일 영향권역에서 '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증가되는 규모'가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*의 15% 이상인 경우 등에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함

* (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) 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[별표 3]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를 말함(공장설립승인면적 150,000㎡ 이상)

- 이 경우 '사업계획이 변경되어 규모가 증가되는 사업'은 환경영향평가 제도 시행 전에 승인을 받은 종전 사업(공장)을 의미함

- 따라서, 사업계획 변경으로 종전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(발전시설)을 추진할 경우에는 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[별표 3] 비고 제4호다목2)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인 발전시설에 대하여 별도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

※ (법제처 법령해석례, 18-0504, '18.10.1) 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[별표 3] 비고 제4호다목2)에 따르면 사업의 승인 등을 할 당시에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았으나 같은 표의 개정으로 새로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이상의 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으로서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증가되는 규모가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1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, 여기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규모가 증가되는 사업은 종전 사업을 의미하며, 다른 종류의 사업은 포함하지 않음

☞ ②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[별표 3] 비고 제9호에 따라 같은 사업자가 '둘 이상의 사업'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로서 계산식(해당 사업면적 또는 용량 등/별표 3 대상사업의 최소면적 또는 용량 등+ · ·)에 따라 산출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경우에는 이들 사업에 대한 평가서를 하나로 통합하여 작성하고,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

- 이 경우, '둘 이상의 사업'에는 환경영향평가 제도 시행 전에 승인을 받은 사업(공장)은 포함되지 않음

※ (법제처 법령해석례, 법제처 18-0504, '18.10.1)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[별표 3] 같은 비고 제9호에 따르면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로서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, 여기서 "둘 이상의 사업"에 "종전 사업"이 포함되지 않음

Q 4. 누적된 토지이용계획 변경률

○ 환경영향평가 협의(100만㎡) 이후 승인기관과 2차례 변경협의를 한 사업장이 아래와 같이 추가로 토지이용계획 변경하고자 할 때 토지이용계획 변경률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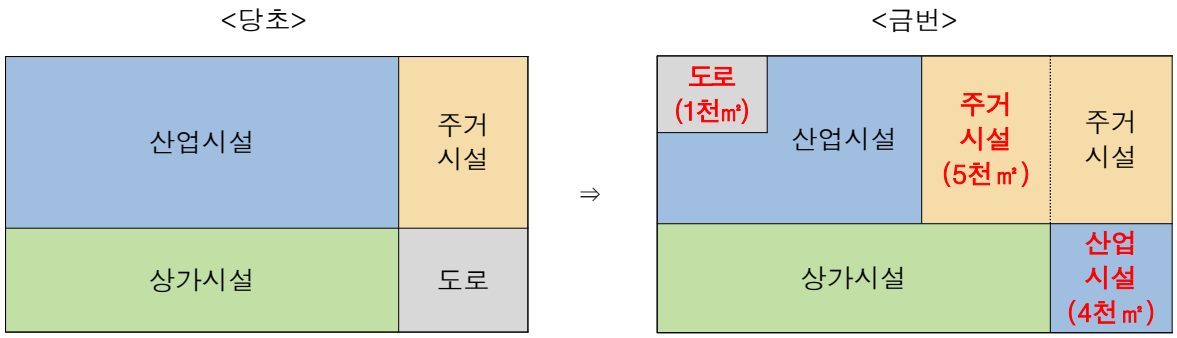
- 1차 변경 : 환경영향평가 협의한 토지이용계획 대비 5%(5만㎡) 변경
- 2차 변경 : 환경영향평가 협의한 토지이용계획 대비 9%(9만㎡) 변경
  1차 변경협의 대비 7% 변경(7만㎡) 변경
- 금회 변경 : 환경영향평가 협의한 토지이용계획 대비 12%(12만㎡) 변경
  2차 변경 대비 4% 변경(4만㎡) 변경

☞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제55조제2항제5호 후단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과의 환경영향평가 협의·재협의·변경협의를 한 후 해당 협의에 따른 최종 부지면적의 15퍼센트 미만으로 토지이용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면적을 누적하여 토지이용계획으로 변경하는 면적을 산정함

- 본 사업의 경우,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「환경영향평가법」제33조제2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검토를 통해 변경된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하여 누적하면 16%[5%(1차) + 7%(2차) + 4%(금회)]임

Q 5. 토지이용계획 변경률

○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산업단지(150,000㎡)에 대하여 일부 시설용지를 변경하는 사업계획 변경시 토지이용계획 변경률은?



☞ 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제55조제2항제5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의 변경률은 환경부장관과의 최종협의(변경협의, 재협의)에 반영된 부지면적의 토지이용계획도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토지이용계획도를 중첩하여 변경된 면적의 비율을 토대로 산정함(최종협의에 반영된 면적 중 제척된 부지는 변경되지 않은 면적으로 봄)

- 따라서, 금번 토지이용계획 변경은 10,000㎡[주거시설(5천㎡) + 산업시설(4천㎡) + 도로(1천㎡)]로 토지이용계획 변경률은 6.7%임

Q 6. 사전공사 금지의 예외

○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토사적치장을 설치하여 토사를 반입하는 경우 사전공사에서 제외되는지?

☞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34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사업의 성토를 위해 사업장 부지 내에 토사적치장을 설치하는 공사는 사전공사에 해당되지 않으나, 외부 토사를 반입하는 것은 사전공사에 해당됨

Q 7. 제척된 부지의 시설 · 시설 규모의 증가율

○ 환경영향평가(490만㎡)를 협의 이후 일부 면적(14만㎡)이 제척되어 승인된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연접지역을 추가로 개발(12만㎡)하고자 할 때 사업규모 증가율?

☞ 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제54조제2항제1호 및 제5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협의내용에 반영된 사업·시설 규모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(시행령 [별표 3]) 해당되는 사업의 승인등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규모를 말하며, 제척·감소되는 규모는 적용하지 않음

- 또한, 사업·시설 규모의 증가란 당초 협의한 사업규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가 새로 추가·확대되는 규모를 말함

- 본 사업의 경우, 협의내용에 반영된 사업·시설 규모(490만㎡)의 10% 미만(12만㎡*100/490만㎡)으로 증가하므로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승인기관 장의 검토를 받으면 될 것임

Q 8. 토석채취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대상

○ 주택건설사업(150,000㎡)시 산지전용허가(80,000㎡)와 토석채취허가(50,000㎡)를 받을 계획인데, 그 중 동일부지(50,000㎡)에 산지전용허가와 토석채취허가(부수적 토석채취)가 수반될 경우 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[별표 3] 비고 제9호 계산식 산정방법은?

- 주택건설사업 : 150,000㎡(150,000㎡/300,000㎡=0.5)
- 산지전용허가면적 : 80,000㎡(80,000/200,000=0.4)
- 토석채취허가면적 : 50,000㎡(50,000/100,000=0.5)

☞ 같은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, 산지전용허가 및 토석채취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되어 추진하는 경우에는 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[별표 3] 비고 제9호에 따른 계산식 수치의 합이 1 이상이면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함

- 아울러, 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[별표 3] 제17호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인 토석채취사업의 일환으로(부수적 토석채취) 동일 면적에 두 인허가(「산지관리법」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토석채취허가)가 동시에 수반될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승인 면적을 적용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산정하고 토석채취허가가 수반되지 않는 산지전용허가는 같은법 시행령 [별표 3] 비고 제12호3)를 적용하여야 함

- 본 사업의 경우 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[별표 3] 비고 제9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이므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임

* 계산식 = (주택건설사업 150,000㎡/300,000㎡)+(산지전용허가 30,000㎡/200,00㎡)+(토석채취허가 50,000㎡/100,000㎡) = 1.15

Q 9. 수목이식계획 변경에 따른 협의대상

○ 환경영향평가시 기존 수목(180주)의 훼손이 예상되어 전량 이식하여 재활용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으나, 일부 고사 등으로 이식 수목 조정에 따른 수목이식계획 변경시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33조에 따른 변경협의 대상인지?

☞ 개발사업 시행시에는 수목이식계획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나, 불가피하게 이식 수목량 등 처리계획의 변경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,

-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3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함

- 다만,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사항에 해당될 경우(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승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)에는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협의내용관리대장에 기록·관리

Q 10. 산업단지의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

① 산업단지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위한 “입주율”이란 입주업체수의 비율인지, 전체 부지면적에 대한 입주업체 면적의 비율인지?

② 운영시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입주율 70% 도달한 다음 해부터 3년간 실시하는데 조사시점은 착공일 기준인지?

③ ‘준공 후 7년이 되는 날까지 입주율이 70%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이 되는 해에만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’해야 하는데 준공된 해가 2011년이라면 7년이 되는 해는?

☞ ① 산업단지 입주율은 공공시설용지 면적을 제외한 용지면적 대비 동 용지에 입주하는 업체 등의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며, 분양한 부지 중 일부 부지라도 입주를 하였다면 분양한 부지 전체를 입주 부지면적으로 산정함

- 아울러, 해당 산업단지 운영으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운영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므로 공장의 경우 가동신고, 공장 외 건물의 경우 건축물 입주신고 등 실제 입주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행정자료 등을 토대로 입주율 산정

☞ ② 사후환경영향조사기간은 사업준공 후 입주율이 70%에 도달한 다음 해부터 3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업준공 후 입주율이 70%에 도달한 해의 월에 관계없이 다음 해 1월부터 12월까지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사기간이 끝난 달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

☞ ③ 준공된 해가 2011년이라면 7년이 되는 해는 2017년이므로 2016년 12월말 기준으로 입주율이 70퍼센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2017년(1년간, 1.1～12.31)에만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함